

# 해운산업 톤세제도 도입방안

## 톤세제도 개요

톤세제도(Tonnage Tax System)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제도

$$\text{톤세} = \text{순톤수} \times \text{톤세율} \times \text{운항일수} \times \text{법인세율}$$

### 1.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

- 2002. 5~11, 톤세제 도입 연구용역
  -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조세연구원 공동연구
- 2003. 2~2004. 4, 톤세제 도입 실무추진기
  - 해양부, 선주협회, 해운선사, KMI, 조세연구원, 세무·회계법인 등 17명
  - 실무회의 25회, 워크샵 3회 개최
- 2004. 4, 톤세법령 시안 완성
- 2004. 12, 선박톤세법 공포·시행
  - 2004년도 과세분부터 톤세적용 가능토록 재경부와 협의

### 2. 주요국의 톤세제도 도입 현황

- 도입국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영국, 독일, 스페인, 핀란드
- 도입추진국 : 미국, 일본, 뉴질랜드, 인도, 파키스탄, 러시아, 대만 등

### 3. 톤세제도 주요 특징

- 변형된 법인세 부과제도
  - 톤세제도는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을 법인세의 과표로 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법인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
- 톤세제도는 선택한 기업에만 적용됨
  - 톤세제도는 선택한 기업에게만 적용되며, 동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법인세제가 적용됨
- 톤세는 확정세임
  - 톤세는 확정세로서 세전 이익경감을 위한 감가상각, 손실이월, 투자금액 공제, 특별이익 유보, 그룹간 손실상계 등으로 톤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
- 일정한 조세부담
  - 영업손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로 납세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어 조세부담예측이 가능하여 안정된 경영정책 수립이 가능함
- 환-리스크로부터 회피
  -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외화환

산이익 발생시에도 정해진 톤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법인세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함

- 세무조정이 불필요함
  - 세금절감을 위한 결손금 이월 등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함
- 경영합리화 도모
  - 법인세 체제하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운시황에 관계없이 선박투자를 하였으나, 톤세제 하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없어 해운시황에 맞는 투자정책 수립이 가능함

#### 4. 우리나라 톤세제도 기본구조(초안)

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에서 협의된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음

##### 가. 용어의 정의

- 톤세
  - 선박별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세금
- 톤세제도
  -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
- 톤수표준이익
  -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에 일정율의 톤세율과 운항일수를 곱한 추정이익으로서 과세표준을 말함
- 톤세율
  - 100순톤당 1운항일당 추정이익의
- 톤세기업
  - 톤세제도를 선택한 기업
- 해운소득, 비해운소득
  - 해운소득 : 해상운송소득 및 해상운송에 필수적으로 연계된 소득으로서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소득
  - 비해운소득 : 해운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톤

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

- 톤세적용기간
  - 톤세기업에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
- 용선운항순톤수, 기준운항순톤수
  - 용선운항순톤수 : 2년미만 외국적 용선선박의 순톤수와 연간 운항일수를 곱한 순톤수의 합계
  - 기준운항순톤수 : 기준선박의 순톤수와 연간 운항일수를 곱한 순톤수의 합계
- 기준선박
  - 톤세기업이 소유한 한국선박(BBC HP포함)과 2년이상 용선한 한국선박(BBC HP포함)으로서 톤세기업 요건 산정시 기준이 되는 선박
- 톤세자산, 비톤세자산
  - 톤세자산 : 해상운송 및 해상운송에 필수적으로 연계된 활동에 필요한 자산
  - 비톤세자산 : 톤세자산 이외의 자산

##### 나. 톤세제도 기본구조

- 적용업종
  - 『외항화물운송사업』 및 『외항여객운송사업』
- 적용선박
  - 『외항화물운송사업』 및 『외항여객운송사업』에 제공되는 선박
    - 톤세기업이 운항에 제공하고 있는 소유선박, 용선선박 및 대선선박
    - ※ 영국, 네덜란드 등 유럽도 일반적으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톤세적용대상을 한정
- 적용톤수
  - 국제톤수증서상의 『순톤수(Net Tonnage)』를 기준톤수로 함
    - ※ 순톤수 : 선박의 총톤수에서 선원실, 기관실 및 밸러스트 탱크 등 화물이나 여객에게 관계없는 장소를 제외한 톤수이며, 여객과 화물의 수송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, 톤세, 항세, 안벽 사

요금 및 등대 사용료 등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됨

※ 유럽에서도 순톤수를 톤세산출의 기준톤수로 사용

• 톤세기업의 요건

○ 「용선운항순톤수」가 「기준운항순톤수」의 5배 이하인 기업

- 용선운항순톤수 : 2년 미만 외국적용선 선박의 순톤수 연간운항일수

- 기준운항순톤수 : 기준선박의 순톤수 연간운항일수

- 기준선박의 범위: 소유선박 + 2년이상 용선

· 소유선박 : 한국선박 · BBC/HP (대선 포함)

· 2년이상 용선 : 한국선박 및 BBC/HP(2년이상 용선 중 대선한 선박 포함)

※ 영국, 네덜란드의 경우 용선 선박이 기준선박의 75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, 우리나라는 용선운항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5배(500%) 이하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, 대선도 기준선박의 범위에 포함하여 용선 가능비율이 확대되도록 함

• 톤세기업 요건의 상실

○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(5년) 동안 2회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2회째 연도부터 톤세기업의 자격 상실

-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중에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「잔여기간+5년」간 톤세제도 선택 금지

※ 영국, 네덜란드는 톤세제도를 선택한 해에 용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톤세제도 적용이 실효되며, 톤세적용기간 중 요건이 미달한 경우, 다음 연도말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충족한 2년간 톤세적용을 받지 못함은 물론 향후 10년간 톤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음

※ 별첨 (1) 「톤세기업자격 상실시기 및 톤세선택 금지기간 예시」 참조

• 톤세적용기간

○ 톤세적용기간 : 5년

- 적용기간을 유럽처럼 10년으로 할 경우 해운시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유럽의 절반으로 단축

• 적용대상 소득

○ 톤세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톤세가 부과됨

- 해운소득은 해상운송소득 및 해상운송에 필수적으로 연계된 소득을 말함

-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산정 방식대신 톤수표준이익을 과표로 한 톤세가 부과됨

• 비해운소득

- 톤세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됨

- 비해운소득이라함은 해운소득이 아닌 소득

- 비해운소득이 전체소득의 5%이하인 경우 톤세 적용

○ 톤세기업의 법인세 산출예시

- 법인세 = 톤세 + 법인세

$$\text{해운 소득} = \text{톤세} = \frac{\text{과세표준 (톤수표준이익)}}{\text{과세표준}} \times \text{법인세율}$$

$$\text{비해운 소득} = \text{법인세} = \frac{\text{과세표준 (소득·결손금 등)}}{\text{과세표준}} \times \text{법인세율}$$

• 톤세의 산출

○ 톤수표준이익 법인세율

- 톤수표준이익 : 선박 1척당 과세표준액 = 순톤수 톤세율 운항일수

- 톤세율 : 100순톤당 1운항일당 추정이익

• 톤세산출 예시

○ 순톤수 17,000톤 선박의 영국톤세율에 의한

톤세 : 11,973,825원

- 별첨 2. 「톤세산출 예시」 참조

#### 다. 회계처리의 원칙

##### • 톤세와 법인세의 상계 금지

○ 톤세기간중 톤세(자산)와 법인세(자산)와의 상계 금지

- 톤세기간중 톤세와 법인세와의 여하한 상계도 금지됨

- 톤세기간중 법인세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을 동일기간에 산출된 톤세와 상계처리하여 톤세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음

※ 톤세와 법인세와의 상계금지는 톤세가 확정세기기 때문이며, 유럽에서는 이를 “올타리(Ring Fence)”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

##### • 감가상각

○ 톤세기간중 톤세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장부상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하되 동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불산입(소멸처리)

- 톤세기간중에도 톤세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장부상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됨. 그러나, 톤세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처리함

- 톤세기간동안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톤세기업이 다시 법인세로 복귀할 경우에 감가상각을 계속 진행해야 함에 대비하기 위함임

##### • 유보

○ 톤세기업의 톤세제도 선택이전의 법인세 기간중의 유보는 톤세영역과 법인세영역으로 구분

- 톤세부문 유보와 법인세부문 유보로 구분하여 각각 관리하며, 톤세기간동안의 톤세부문 자산과 법인세부문 자산에 각각 연결처리함  
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

하여 사용된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한 처리

○ 해당자산의 법인세 기간과 톤세적용 기간 사용비율에 따라 각각 법인세와 톤세가 적용됨

- 어떤 기업의 톤세자산이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 사용되었을 경우 동 자산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제도와 톤세제도의 적용기간에 따라 각각 그 적용기간별 비율만큼의 톤세와 법인세가 부과됨

#### 라. 제반절차

##### • 톤세제도와 법인세제도의 선택권 부여

○ 개별기업별로 유리한 시점에서 톤세제도 또는 법인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. 톤세기간이 만료되면 기업은 톤세제도와 법인세제도중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세제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

※ 영국, 네덜란드의 경우 톤세제도와 법인세제도를 10년마다 강제적용하며, 톤세제도를 선택하면 10년간 변경이 금지되고, 톤세기간이 만료된 차기년도에는 모든 기업이 톤세제도 또는 법인세제도 선택여부를 선언하여야 함

##### • 톤세제도 선택 및 적용시기

○ 매 회계기준연도 종료 1개월전에 톤세제도 선택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까지 톤세제도 적용

##### • 톤세제도적용 신청 절차

○ 매 회계연도 종료일 1개월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국세청에 신청

##### • 톤세기업의 요건 확인

○ 해양수산부가 톤세기업의 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서 발급

- 용선운항 순톤수와 기준운항 순톤수의 비율이 톤세기업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

※ 톤세적용기간의 종료에 따른 톤세제도의 재선택

○ 통세적용기간(5년) 종료후 통세제도를 선택하지 않은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제가 적용됨

마. 기타

• 공동운항

○ Space Charter, Slot Charter, 선복 Pool, 컨소시엄 등 공동운항 참여 기업의 공동운항사업부분에 대한 통세는 선복참여비율에 비례함

• 인수·합병·분사

○ 법인의 합병, 인수, 분사의 경우 합병, 인수 또는 분사법인이 통세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통세제도 적용을 받을수 있음

[ 별첨 1. ] 통세기업 자격 상실시기 및 통세선택 금지기간 예시

법인세 적용기간	통세 적용기간				
	통세선택 1년차	통세선택 2년차	통세선택 3년차	통세선택 4년차	통세선택 5년차
사례①	×	×	-	-	-
사례②	○	×	×		-
사례③	○	×	○	×	-

※ 주 : ○ : 통세 적용요건 충족, × : 통세 적용요건 상실

1. 사례 ①의 경우

- 통세회사 자격상실시기 : 통세선택 2년차
- 통세선택 금지기간 : 9년 (잔여기간 4년+5년)

2. 사례 ②의 경우

- 통세회사 자격상실시기 : 통세선택 3년차
- 통세선택 금지기간 : 8년 (잔여기간 3년+5년)

3. 사례 ③의 경우

- 통세회사 자격상실시기 : 통세선택 4년차
- 통세선택 금지기간 : 7년 (잔여기간 2년+5년)

[ 별첨 2. ] 통세산출 예시

가. 영국통세율

선박의 크기	1 운항일 통세율/100순톤
1톤 1,000톤	1,080원
1,001톤 10,000톤	810원
10,001톤 25,000톤	540원
20,000톤 이상	270원

나. 17,000 NT 선박의 1척당 통세 = 11,973,825원

- 1톤 1,000톤 :  $\{(1,000 \div 100) \times 1,080 \text{원} \times 365 \text{일}\} \times 0.27 = 1,064,340 \text{원}$
- 1,001톤 10,000톤 :  $\{(9,000 \div 100) \times 810 \text{원} \times 365 \text{일}\} \times 0.27 = 7,184,295 \text{원}$
- 10,001톤 17,000톤 :  $\{(7,000 \div 100) \times 540 \text{원} \times 365 \text{일}\} \times 0.27 = 3,725,190 \text{원}$

17,000 N/T 선박의 1척당 통세 : 11,973,825원

- ※ 주 : 1. 통세율 : 영국통세율을 적용하여 산출
- 2. 통 세 : 통수표준이익 법인세율(27%)
- ※ 통수표준이익 : 순톤수 × 통세율 × 운항일수